

# 南北韓 經濟特區의 開發戰略에 관한 研究\*

林 陽 澤\*\*

<目 次>

- I. 序 論
- II. 南北韓 經濟特區의 基本構想과 期待效果
- III. 南北韓 經濟特區를 위한 制度的 裝置
- IV. 南北韓 經濟特區의 適正地域 選定
- V. 南北韓 經濟特區의 段階別 推進戰略
- VI. 結 論

## I. 序 論

本研究의 分析目標는 北韓經濟의 대외적 개방과 남북한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의 하나로서 “南北韓 經濟特區”를 제시하고자 하는데<sup>1)</sup> 이와 관련하여, i) 南北韓 經濟特區의 기본개념 및 기능과 적정지역의 선정, ii) 南北韓 經濟特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조약과 經濟交流協定의 締結, 남북한 경제교류에 관한 特別法의 制定, 남북한 經濟特區를 위한 기본협정과의 合意에 필요한 내용, iii) 남북한 經濟特區의 단계별 개발전략 및 건설시기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南北韓 經濟特區가 건설되어야 하는 必要性으로서 다음과 같이 8가지를 들 수 있다.

- i) 南北韓 經濟特區의 건설을 통하여 남북한간의 對決構造를 平和構造로 지양함으로써 한민족 전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南北韓 統一과 世界平和를 위한 공동노력에 대하여 대내외적으로 신뢰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 ii) 남북한 국민에게 자유스러운 행동이 가능한 지역을 相互 共同으로 관리

\*本研究는 韓國經濟學會의 1990年度 定期學術大會(1991.2.8)에서 발표되었던 “南北韓 經濟特區의 開發戰略과 適正地域의 選定에 관한 研究”를 다시 수정보완한 것임

\*\*漢陽大學校 經濟學科

1) 林陽澤 (1991b, pp. 75~105).

및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남북한 체제의 이질성에 대한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장차 民族統一에 대비한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실천적 장소로서 南北韓 經濟特區의 건설은 필요한 것이다.

iii) 남북한 상호간에 비대립적이며 공개적 및 비공개적인 상시적 모임의 광장으로서 南北韓 經濟特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남북대화는 정치적으로도 공개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非公開的인 대화의 모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모임의 장소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南北韓 의 대화를 위한 모임의 절차와 장소의 선택에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祕密訪問에 따른 불필요한 잡음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iv) 세계적인 탈이념의 시대조류와 국제무역의 블력화 추세에 따라, 南北韓 經濟特區의 건설을 통한 南北韓 經濟協力의 추진은 北韓의 經濟危機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한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으로 인하여 남북한 쌍방의 경제성장과 복지증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v)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經濟統合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큰 것인데, 經濟統合의 단계는 우선 自由貿易地域→關稅同盟→共同市場→經濟同盟의 발전 과정을 겪은 다음에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다.<sup>2)</sup> 그러나 남북한의 교역은 상기와 같은 일반적 유형으로 발전함이 이상적이겠지만 남북한의 교역이 國家間交易이 아닌 地域間交易이고 또한 남북한이 상이한 經濟體制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교역은 독특한 형태로 발전될 수 있다. 따라서 南北韓 經濟統合 나아가서 政治的統合까지 발전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서 남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非軍事的, 非政治的 緩衝地域(buffer zone)으로서 經濟特區(special economic zone)의 설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vi) 北韓은 合營法을 제정하고 두만강 하구 哈山島(中蘇 국경지대에 접한 北韓 北東部地域)에 「自由企業地域」을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同 사업이 원활히 시행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왜냐하면 北韓은 외채부담이 클 뿐만 아니라 서방측 국가와의 무역에 있어서 원만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외자유치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응하여 北韓은 재외교포에 의한 자본유치에 치중하고 있으나 이 방법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실

2) 林陽澤 (1989b).

정이다.

그러므로 北韓은 궁극적으로 南韓의 경제력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는 판단을 내릴 것이며, 南韓도 언젠가는 낙후된 北韓을 발전시켜야 될 것이므로, 南北韓은 經濟協力의 기회를 창출 및 활용할 수 있는 실천적 장소로서 南北韓 經濟特區의 건설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vii) 국토계획상 軍事分界線 地域은 국토의 중심지역임과 동시에 南北韓 연계지역이며 지역적으로 다양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발잠재력이나 국토개발계획상 활용성이 높은 要衝地域이다. 그러나 현재는 이곳이 가장 낙후된 지역일 뿐만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개발계획이 南北韓 상호간에 모두 없기 때문에, 南北韓이 統一될 경우 문제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同 지역에 南北韓 經濟特區의 건설은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北韓은 남북한 경제지구의 건설이라는 著者의 정책제안과 관련하여 中國의 對外開放政策의 발전과정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즉, 中國은 對外的 開放을 위하여 이미 1979년 7월 외국인의 직접투자를 허용함으로써, 先進技術, 設備 및 經營技法을 도입하기 위하여 “中外合資經營企業法”를 공포한 이후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던 것이다. 그리고 中國은 先進技術과 資本을 도입함으로써 수출증대와 소득 및 고용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1980년 8월에 沿海地域인 하문, 심천, 주해, 선두, 해남에 經濟特區를 설치하였으며, 또한 우선沿海地域부터 개발시키기 위하여 1984년 4월에 14개의 지역(대련, 진황도, 천진, 연대, 청도, 연운항, 남통, 상해, 영파, 복주, 광주, 기강, 북해, 온주)에 經濟開發區를 설치하였던 것이다.<sup>3)</sup>

## II. 南北韓 經濟特區의 基本構想과 期待效果

### 1. 南北韓 經濟特區의 基本概念

經濟特區의 基本概念은 中國의 經濟特區에서 찾아볼 수 있다. 『中國經濟新聞』의 평론(1981. 6. 29)과 張榮豐(1987)의 연구에 의하면<sup>4)</sup> “중국경제특구는 레닌이 말한 바 자본주의의 자금, 기술 및 경영관리 경험을 이용한 사회주의 건설이론에 관해 연구하고, 세계 각국에 설치된 自由貿易區와 加工輸出區의

3) 吳勇錫 (1991).

4) 張榮豐 (1987).

경험을 빌려 중국경제의 구체적 상황과 결합시킴으로써 「四個 現代化」<sup>5)</sup>를 촉진시키기 위한 중국사회주의 경제의 일종의 보충형식"으로 정의된다.<sup>6)</sup>

그러나 中國은 5개의 經濟特區(하문, 심천, 주해, 선두, 해남)를 13개 개방도시(대련, 진황도, 천진, 연대, 청도, 연운항, 남통, 상해, 영파, 복주, 광주, 기강, 북해)의 經濟技術開發區와 함께 서방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창구로서, 경제지구에 市場經濟體制를 도입시켜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와의 융합을 통하여 소위 "中國式 社會主義體制"를 구축하는 體制의 實驗場으로서, 홍콩·마카오 및 대만과의 經濟統合을 위한 기반으로서,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연결고리로서 채택, 운용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의 對外開放政策은 경제지구→연안개방도시→연안경제개발구→내륙의 순서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데에 거시적 목표를 두고 있다.

중국 경제지구의 運用現況을 통하여 그 機能을 살펴보면 중국의 경제지구는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兩面性을 갖고 있다. 즉, 經濟特區內의 外國人 單獨投資企業의 소유자가 자본가이고 자본주의적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는 반면에 이들 기업을 규제하는 입법, 사법 및 행정적 조치는 사회주의 法規範에 입각하여 집행되는 것이므로 사회주의 성격을 갖고 있다.<sup>7)</sup>

여기서 유의할 것은 本 研究가 제시하고자 하는 南北韓 經濟特區는 상기한

5) 서기 2000년안에 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전면 달성한다는 것.

6) 經濟特區와 유사한 개념으로서 自由貿易地帶(free trade zone) 또는 加工輸出地帶(export processing zone)을 들 수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것은 自由貿易地帶이다. 이의 배경은 19세기에 세계 열강들이 海運業을 이용하여 세계 각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다른 지역의 시장으로 운송, 판매함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얻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무역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따라 "자본주의 최고단계인 帝國主義의 摧取" 형태라는 이유로 공격의 대상이 되어왔다.

7) 이 2가지 特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社會主義的 性格을 살펴보면 中國의 經濟特區가 資本主義 國家들에 설립되어 있는 自由貿易地帶나 加工輸出地帶나 비슷하다고 할지라도 經濟特區의 社會制度가 社會主義 法제도의 지배를 받고 있고, 비록 資本主義 國가들과의 협력에 의해서 經濟特區에 설립된 외자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의 관리하에 있으며 다만 대외적으로 인정된 특혜의 범위 안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 뿐이다.

둘째, 외자기업과 그 경제활동의 범위만을 놓고 보면, 중국의 經濟特區는 자본주의적 성격을 갖는데, 구체적으로 經濟特區內의 외자기업이나 공장은 모두 이윤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가들이 투자한 결과이며 經濟特區內에서의 거래관계는 시장의 조절기능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외국인 단독투자기업은 개인자본으로 인정되며, 合資企業과 合作企業은 국가자본주의적 성격을 갖고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을 각각 들 수 있다.

中國의 經濟特區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별된다는 점이다.

첫째, 中國의 經濟特區는 中國의 이니시어티브(initiative)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것인 반면에, 본 연구의 南北韓 經濟特區는 南北韓이 합의하여 공동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둘째, 中國의 經濟特區는 서방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창구로서, 資本主義 市場經濟體制와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의 융합을 통하여 中國式 社會主義體制를 구축하는 체제의 실험장으로서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의 經濟統合을 위한 기반조성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와 반면에 本研究의 南北韓 經濟特區는 南北韓의 산업구조를 상호보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經濟協力의 실천장소로서, 남북분단 이후 괴리된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서, 통일민족국가의 실현 후 국토개발의 중심지로서, 장차 국제적인 平和市로서의 역할을 하는 韓民族의 都市인 것이다.

셋째, 中國의 經濟特區는 사회주의 법규법에 의거하여 特區內의 기업활동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社會主義的 性格을, 特區內의 외국인 단독투자기업의 소유자가 자본가이고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資本主義的 性格을 모두 갖고 있다. 이와 반면에 本研究의 南北韓 經濟特區의 경우 特區內의 투자기업은 南北韓 合作企業으로서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것이며, 特區內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조치는 쌍방에 의해 합의 및 체결된 南北韓 基本關係條約에 의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本研究의 南北韓 經濟特區는 脫이데올로기, 脫정치, 脫군사적 특성을 가짐으로써 일종의 中立國家的 性格을 내포하고 있으며, 特區內의 行政을 南北韓 基本關係法에 의거하여 쌍방이 공동으로 구성한 第3의 組織이 맡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著者는 南北韓 經濟特區를 超國家的, 脫이데올로기적 行政原理가 적용되며, 노동, 상품, 자본 및 기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共同市場이며, 모든 관세 및 비관세의 무역장벽이 철폐되고 기술적·물리적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 특수지역이라고 定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居住, 休息, 就業活動, 交通과 같은 4개의 概念 또는 기능이 동시적으로 일정한 공간내에서 충족되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개념의 도시로서 南北韓 經濟特區가 건설된다면 거주자는 일정한 정치체제에 귀속되어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국가의 통치행위가 요구된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가통치행위를 전제로 한 도시로서 南北韓 經濟特區를 건설할 수 있으며, 南北韓 經濟特區가 하나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도시의 4대기능 중에서 거주를 제외한 나머지 즉 휴식, 취업활동, 교통의 3대기능을 가진 도시를 南北韓 經濟特區로서 설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sup>8)</sup>

南北韓 經濟特區가 주거의 기능을 배제하더라도 현재의 남북한 대치상황에서는 南北韓 經濟特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탈이데올로기, 탈정치, 탈군사적 특성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특히 비정치적인 교류를 전제로 한 南北韓 經濟特區에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구성한 제3의 조직이 운영하는 일종의 국제연합이나 중립국가적인 특성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 2. 南北韓 經濟特區의 機能

本研究는 南北韓 經濟特區가 갖게 될 基本機能으로서 3가지, 즉 i) 공업 경제특구의 기능, ii) 평화시의 기능, iii) 국토개발의 기능을 제시하고자 한다.

### 1) 工業經濟特區의 機能

현재 북한의 1984년 9월에 제정된 合營法에 의한 사업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공업부문에 있어서 팔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이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련 부품산업의 落後와 전기의 부족 및 원자재 적시 공급의 애로사항 등을 들 수 있다.

사실, 북한에 대한 남한의 공업투자는 국내법의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1972년 7월 4일의 南北共同聲明(7.4 공동성명)과 1988년 7월 7일의 對北政策 6개항 특별선언(7.7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와 반면에, 북한은 남한의 기업이 北韓內 中心地域에서 공업투자를 할 경우 생산성향상의 이익보다 북한주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더 腐心할 가능성이 있다.<sup>9)</sup> 그러나 북한경제의 현황을 보면 合營法에 의거하여 외국의

8) 만약 장단면이 南北韓 經濟特區의 適正地域으로 설정된다면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30여km 떨어진 “一山”이라는, 주거기능이 특화된 신도시가 계획 및 건설 중에 있으므로 주거기능이 배제된 남북한 경제특구와 同機能이 특화된 一山 신도시는 기능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9) 이 우려는 하나의 노파심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著者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經濟特區가 비교적 잘 발전되고 있는 中國의 經濟特區는 사실상 Kamath(1990)가 지적

자본과 선진기술을 유치할 수 밖에 없는데, 만약 그 對象이 남한이라면 북한은 '조용한 가운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으므로 南北韓 合作事業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休戰線의 非武裝地帶나 休戰線과 접하는 地域은 남한에게는 수도권 내의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업입지로서는 적절한 지역이 될 수 있는 반면에 북한에게는 落後地域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인구를 소개시킨 상태이므로 '조용한 가운데' 실리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 중에서 공업입지에 적절한 지역을 선택하여 南北韓 工業經濟特區로 선포하여 남북한의 공동사업으로 공업단지를 개발하고 여기에 南北韓 合作工場을 건설 및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工業經濟特區는 그 위치가 비무장지대이거나 북한 또는 남한에 위치하더라도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원자재와 노동력이 결합될 수 있는 合作投資를 추진하고, 경영이익은 상호간의 투자비율에 따라 적절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工業經濟特區의 운영 및 관리에 요구되는 각종 에너지, 전기, 석유와 용수 등은 남북한의 어느 쪽이나 자유스럽게 선택하여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공장에 요구되는 원자재나 부품 및 완제품도 남북한 어느 곳에서도 구매 및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최대한의 경영 자율권을 부여한다면 工業經濟特區의 성공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한편, 南北韓 經濟特區에 주거기능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에 남북한의 기존 주거지역을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특구에 종사하는 노동자는 남북한에서 각각 출퇴근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 南北韓 經濟特區에 대개 설치되어야 할 기본 시설로서 다음과 같이 5가지를 들 수 있다.

i ) 工業經濟特區로서의 산업활동을 위한 공업생산시설, 창고보관시설, 수리시설

---

한 外部封鎖區(foreign enclave)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 중국의 경제특구가 外部封鎖區가 될 가능성이 높거나 혹은 사실상 그렇게 되어 있는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經濟特區가 위치하고 있는 중국의 沿岸 개방지역은 수출확대를 통해서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적 바탕위에 개발되기 시작한 곳이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i ) 經濟特區의 투자여전이 조성되어야 하며, ii ) 後方 및 前方 波及效果가 극대화되도록 원료산업에서부터 最終生產物產業(upward induring downward industry)이 고루 발달되어 있어야 하며, iii ) 수출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 ii) 經濟特區地域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업무시설, 금융기관, 보안·관리·치안기관, 생산품 전시장, 회합을 위한 시설
- iii) 經濟特區의 근무자와 업무 혹은 관광목적의 방문객을 위한 휴식, 위락, 편익기능, 병원 및 위생시설, 宿泊施設, 觀光施設
- iv) 근무자 및 방문객, 정보, 원료, 생산품의 유통을 위한 교통시설, 터미널시설, 정보처리 및 교환시설
- v) 經濟特區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처리시설

이러한 기본시설들은 경제특구에 유치될 업종에 따라 대폭적으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설규모의 문제는 다소 있겠지만 이러한 제반시설이 완비되어야만 經濟特區가 물리적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諸般機能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시설은 기존 시가지를 활용하는 것이 상례이며, 이러한 기본시설들이 상호 경쟁적인 관계에 있을 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本研究에서는 주거지를 제외하고는 남북한이 상호 직접 방문하여 자유스럽게 기존 시가지의 諸般基本施設을 활용할 수 없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 왜냐하면 남북한이 상호 기존 시가지를 직접 방문하여 여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이는 南北韓 經濟特區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상황, 예를 들어 南北韓 經濟統合이 이미 달성된 상태일 것이며, 그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북한 모두에게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 2) 平和市의 機能

전술한 바와 같이, 南北韓 經濟特區는 비단 경제적 기능 외에도 平和市의 기능을 담당해야 할 것이므로 평화시 기능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初期段階에는 남북한 대치로 인한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모임과 對話의 상징적 도시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이 일정한 發展段階에 들어서게 되면 世界平和의 광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地政學的인 位置를 고려해 볼 때, 한민족이 평화적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루어냄으로써 세계에 민족적 자긍심을 제고하였듯이, 이제는 세계에 오랫동안 전쟁발발의 긴장을 주어왔던 정신적 빚을 갚기 위하여 南北韓 經濟特區에 세계의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平和의 廣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한반도는 유럽과 아시아대륙의 出入口이면서도 남북한의 단절로 인하여 반도의 잇점을 활용할 수 없었으며, 이는 北韓은 물론 남한으로서도 성장의 잠재력을 상실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韓半島의 특성을 활용하기 위한 一次的인 段階로서 휴전선을 중심으로 단절된 교통, 통신, 에너지, 수자원 등을 남북한간에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南北韓 經濟特區가 단순히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해야 할 뿐만 아니라 國際的 平和都市로서의 기능을 해야 될 것이라는 규범적 가치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南北韓 經濟特區는 平和市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대도시의 각종 기능을 필요로 할 것인데, 예로서 다음과 같은 7 가지를 들 수 있다.

- i ) 이산가족, 관광객, 정책입안자 등의 만남과 협상을 위한 시설
- ii ) 學術交流를 위한 시설
- iii) 體育文化의 교류를 위한 시설
- iv) 상기한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숙식, 휴식, 구매시설
- v ) 平和市가 물리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공급처리시설
- vi) 平和市를 관리 운영하기 위한 업무시설, 보안·관리·치안시설
- vii) 平和市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응급처리시설

### 3) 國土開發의 機能

휴전선은 南北韓의 軍事的 對峙로 인하여 지금까지 國民經濟的으로나 社會的으로 활용되지 못한 지역이었다. 그러나 면적의 크기나 위치상으로 볼 때, 平和的으로나 經濟的으로 활용가치가 높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만약 북한이 실제적으로 군사적 침략을 포기한다면 이 지역의 非軍事的 활용을 최소한 표면적으로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休戰線 非武裝地帶 중에서 남북한 쌍방간에 實利的일 수 있는 지역의 일부분을 개방하여 상호 활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휴전선 지역은 남북한 상호간의 대립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평화적 목적의 개발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는 것에는 限界가 있다. 사실, 이 지역에는 매립가능지, 자연환경보존지, 도시화가능지, 남북한 연계기반시설용지 등이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군사적인 측면에서 최소한으로 이용됨에 따라 국토를 非效率的으로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 經濟特區의 건설은 통일을 전제로 한 국토개발계획의 관점에서도 남북한 상호간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될 필요가 있다.

### 3. 期待效果

南北韓 經濟特區의 期待效果로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北韓은 南北韓 經濟特區를 문호개방을 위한 對外窗口로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外國의 資本 및 先進技術의 도입을 통하여, 자체의 經濟危機를 극복할 수 있다.<sup>10)</sup> 對內的으로는 제조업 특히 경공업제품의 생산제고, 해당산업의 고용증대, 다른 산업에 대한 후방관련효과, 북한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對外的으로는 국제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sup>11)</sup>

둘째, 經濟特區를 통하여 美·日·中·蘇 뿐만 아니라 南韓으로부터의 자본

10) 中國이 외국의 자본 및 기술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經濟特區內의 外資企業들에 대한 특혜로서 다음과 같은 4가지를 부여하고 있다.

첫째, 特區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대하여 각종세금, 토지사용 및 출입국 관리상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즉, 企業所得稅率은 일률적으로 15%(다른지역의 외국인 기업소득세율 33%)를 적용하고 투자액이 500만달러 이상의 기업이나 기술이전효과가 큰 기업 및 자본금의回收期間이 긴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2~3년간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5년간은 기업소득세의 절반을 減免하였다.

둘째, 특구 내에서의 생산과 유통은 자유시장의 조절기능에 맡김으로써 정부의 계획과 통제를 배제시키고 있다. 즉, 중공업투자 5,000만달러 이하와 경공업투자 3,000만달러 이하는 국가균형생산건설의 항목에서 제외되고 특구의 基本建設指標도 역시 국가통제항목과 별도로 작성되고 있다.

셋째, 특구 내의 所有制度는 국유제와 집단소유제의 형태가 아니라 중국과 외국인의 공동소유형태(中外合資, 合作)와 외국인 개인소유의 형태(外資獨資)로 되어 있다.

넷째, 특구 내에서의 외국은행지점과 中外合資은행에 대하여 외국인의 중국화폐(人民貨幣) 소지금제도의 예외규정이 적용됨으로써 人民貨幣의 저축을 받아들이고 人民貨幣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吳勇錫(1991)의 研究를 참조할 수 있다.

11) 中國의 경우를 살펴보면, 1979년~1990년의 기간동안에 외국자본유치실적은 225억달러이며, 外國人 直接投資가 본격화된 시기인 1984년~1990년의 기간동안에는 외국자본 유치실적은 195억달러인데 이것은 중국전체 고정자산투자의 3% 수준이다. 또한 그리고 1989년의 경우 外國人 直接投資의 對外輸出實績은 49억달러인데, 이것은 중국전체 수출의 9% 수준이다. 또한 1989년의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의 노동자 수는 47만~50만명의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으로부터 稅收증대, 선진경영기법도입, 관광 등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들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註9)의 참고문헌을 참조할 수 있다.

및 기술협력이라는 명분으로(즉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원조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北韓의 경우 기간산업과 자동화기계설비, 수송설비 및 생활일용품 등 수입수요가 큰 부문에서 輸入代替型 外資를 유치할 수 있는 반면에, 南韓의 경우 현재 국제경쟁력이 강한 전기, 전자,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와 국제경쟁력이 약한 부문으로서 플랜트 해외이전을 도모하고 있는 신발, 섬유 등의 분야에서 合作投資를 추진할 수 있다.

셋째, 經濟特區를 남북한 경제협력의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다.<sup>12)</sup> 상술하면, 北韓의 輸出加工品 비중은 25%인데 이중에서 鐵產物(철강석, 마그네사이트, 유연탄 등) 수출가공품의 비중은 21%이며 총수출의 80%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광산물에 대한 南韓의 年間輸入額은 17억달러이다. 즉, 남한이 어차피 수입해야 할 철강석, 마그네사이트, 유연탄을 북한으로부터 구입하게 되면 남한측으로서도 수송비가 절감되어 이익을 볼 수 있다.<sup>13)</sup> 따라서 남북한 貿易協定을 체결하여 南北韓 經濟特區를 통한 物資交易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12) 南北韓 經濟特區에의 접근방향은 기본적으로 南北韓 產業構造와 產業技術이 相互補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첫째, 南北韓 산업구조의 차이를 보면, 北韓은 기계공업을 위시한 重工業이 輕工業 보다 훨씬 발달되어 있으며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높고 서비스산업이 크게 낙후되고 있다. 이와 반면에 南韓은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높고 工業構造도 고도화되어 있다. 둘째, 南北韓 기술수준을 비교해 보면, 北韓은 내연기관, 화학제품, 전기·전자 등 의 기술을 도입, 확산해 가는 단계에 놓여 있는 반면에 南韓은 이 과정을 거의 완결하고 반도체, 컴퓨터, 로보트, 통신분야, 신소재 등 첨단기술을 개발, 확산해 가는 단계에 있다.

보다 자세한 연구를 위해서 林陽澤(1989a)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13) 北韓地域에는 총 360여종의 광물자원이 부존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 마그네사이트, 중석, 몰리브텐, 重晶石, 螢石 등은 세계 10위 이내에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 이를 포함해서 약 220여종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주요 광물자원의 남북한 부존비율을 보면 마그네사이트는 100% 북한에 매장되어 있으며 철 93.8%, 석회석 98.5%, 중수석 69.7%, 무연탄 89.0%, 유연탄 99.8% 북한지역에 각각 분포되어 있다. 이와 반대로 망간 80.2%, 硅砂 82.7%, 고령토 95.2%, 우라늄 68.7%으로 남한지역에 각각 분포되어 있다.

남북한 모두 제철, 제강용 원료인 역청탄의 생산은 全無하여 이를 전량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남한의 경우 天然資源의 대부분을 海外에 의존하고 있는데, 상술하면 석유, 천연가스, 망간, 마그네사이트, 알루미늄, 인광석 등의 광물자원은 수요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銅 99.9%, 철 97.3%, 金 92.8%, 아연 89.3%, 무연탄 10.3%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광물자원의 공동개발은 자원의 安定的 供給이라는 측면에서 경제적 實益이 높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서 下記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國土統一院, 『北韓經濟 綜合評價』, 1988.

구체적으로 北韓은 南韓에 석탄, 철광석, 아연과 알루미늄 등의 광산물, 옥수수 등의 농산물, 그리고 공작기계, 採取설비 등의 공산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南韓은 北韓에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산업용기계, 섬유, 직물, 의류, 의약품 등을 반출할 수 있을 것이다.<sup>14)</sup>

넷째, 經濟特區의 운영을 통하여 短期的으로는 北韓의 개혁 및 개방이 촉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經濟特區→經濟同盟→經濟的統合→政治的統合의 단계별 발전단계를 거쳐 民族統一國家의 실현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는 중국 경제특구의 경우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은 經濟特區→沿岸開放都市→沿岸經濟開發區→內陸의 순서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데에 巨視的目標를 두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經濟特區와 經濟技術區를 서방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창구로서,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연결고리로서 각각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經濟特區에 市場經濟體制를 도입시켜 社會主義計劃經濟體制와의 융합을 통하여 소위 “中國式 社會主義體制”를 구축하는 體制의 實驗場으로서, 홍콩(심천 경제특구와 인접), 마카오(주해 경제특구와 인접) 및 대만(하문 경제특구와 인접)과의 經濟聯合을 위한 기반으로서 운용하고 있다.

다섯째, 南北韓 經濟特區는 남북한 이산가족의 만남의 광장, 종교인들의 공동집회소, 학술교류장소와 같은 남북한의 상시적 모임장소로서 활용될 수 있다.<sup>15)</sup>

### III. 南北韓 經濟特區를 위한 制度的 裝置

南北韓 經濟特區가 실제로 건설되고 원만하게 운용되기 위해서는 우선 “南北韓 經濟特區의建設 및 運用에 관한 基本協定”을 체결해야 된다. 또한 이 기본協定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南北韓 經濟交流에 관한 特別法”이 제정되어야 하며, 다시 이 特別法의 제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南北韓 基本關係條約과 經濟交流協定이 체결되어야 한다.

14) 상기의 물자교역 뿐만 아니라 南北韓 經濟特區의 운영 여하에 따라 항로, 철도 및 도로의 공동이용을 포함하여 수산자원의 공동개발(예로서 원양어업의 공동진출)과 금강산(북한의 대표적 관광자원)의 공동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15) 이러한 상시적 모임장소를 위하여, 廬太遇대통령은 1988년 10월 19일 유엔연설을 통하여 平和市(Peace City)의 건설을 제안하였다.

## 1. 南北韓 基本關係條約과 經濟交流協定의 締結

南北韓 基本關係條約이란, 東西獨의 경우 1972년 12월에 체결된 「基本條約」과 같이<sup>16)</sup> 休戰協定에 의거하여 현재 戰時狀態인 南北韓의 법적상태를 平和狀態로 회복시키고 적대관계를 평화공존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南北韓 平和條約을 의미한다.

그동안 南北韓 關係는 韓國측의 입장에서 보아 敵對關係→선의의 경쟁자 관계(1972년 7.4 공동성명 및 1973년 6.23 선언에 의하여)→민족공동체의 일부로서 함께 번영을 추구해야 할 동반자 관계(1988년 7.7 특별선언에 의하여)로 발전되어 왔다. 그리고 1982년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의 「南北韓 基本關係 暫定協定」, 1989년 韓民族共同體統一方案의 「民族共同體 憲章」, 1990년 「南北交流協定에 관한 法律」이 제시 및 제정되어 왔다.

따라서 南韓측으로서는 相互實體 認定을 위한 제도적 및 내부적 측면에서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하여 北韓측은 平和統一指向的인 노력을 현실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관한 예로서, 北韓의 憲法 제5조와 제149조를 들 수 있다. 제5조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은 北半部에서 社會主義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며 全國的範圍에서 외세를 물리치고 民主主義의 基礎 위에서 조국을 平和的으로 統一하며 완전한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하여 戰爭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며, 제149조는 「朝鮮民主主義 人民共和國의 수도는 平양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북한측은 상호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남한을 불법단체로 간주하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정복함으로써 北韓主導의 吸收統一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과 대립 속에서도, 南北高位會談을 통하여 남한은 8개항의 「南北關係改善을 위한 基本合意書」를 제안하였고, 북한은 7개항의 「不可侵宣言」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南北韓은 금년 9월 UN 동시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 쌍방은 7·4 共同聲明의 정신에 입각하여, UN 同時加入을 계기로 삼아 남한측은 7·7 特別宣言과 國家保安法의 상충문제를 해결하는 반면에 북한측은 전술한 무력통일의 국내법을 평화통일지향적으로 개정해야 할

16) 東西獨 기본조약은 상호동등권 및 正常的 善隣關係, UN憲章의 목적 및 원칙의 존중, 무력포기, 군비축소, 領域限定의 원칙 및 독립, 자주성의 원칙, 협력 및 社會開放, 常駐代表部의 설치, 既締結條約의相互尊重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것이다. 이와 같은 쌍방의 國內法 改正은 남북한의 休戰狀態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大前提條件으로서 남북한의 平和協定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것은 南北韓 基本關係條約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南北韓 基本關係條約을 체결할 경우, 同 條約에 南北韓 交流 및 協力에 대한 法的 基礎가 될 南北韓 經濟交流協定(무역협정, 투자보호협정, 조세협정)의 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sup>17)</sup> 왜냐하면 남한과의 경제교류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남북한 경제교류가 제3국을 통한 間接去來라고 할지라도 대금결제, 클레임 제기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간접교역이 확대되어 直接交易의 段階에까지 발전되었을 경우에서도, 남북한 경제교류는 일반적인 國際貿易의 慣行을 따르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2. 南北韓 經濟交流에 관한 特別法의 制定

前述한 남북한 기본관계조약과 경제교류협정을 체결한 후, 정부는 南北韓交流 및 協力を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南北韓 經濟交流에 관한 特別法」을 제정해야 할 것이며, 이와 동시에 기존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즉, 7·7 特別宣言에서 한국정부는 남북한 교역을 기존 민간내부교역으로 간주하기로 천명하였으나 현행의 법률체계 하에서 남북한 교류를 원만하게 실시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國家保安法은 反國家團體構成員間의 금품수수, 이익제공과 北韓에의 잠입 및 탈출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한국정부는 7·7 特別措置에서 남북한 민간상사의 교역 및 중계 허용, 남북한 원산지 표시 및 상표부착 허용, 직간접 교역물자에 대한 관세면제, 남북한 경제인 상호접촉 방문 허용, 북한 선적 상용선박의 입항 허가 등 南北韓의 物資 및 經濟人 交流에 대한 運營方針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외국환 관리법,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과 같은 현행 대외거래 관련 법령은 외국과의 거래만을 규정하고 있고 북한과의 거래를 국내거래로 간주한

17) 참고로, 東西獨 基本조약 제7조의 「協力 및 社會開放原則」은 다음과 같다. “獨逸聯邦共和國과 獨逸民主共和國은 양국의 관계정상화 과정에서 현실적인 인도적 문제들을 타결할 용의가 있음을 천명한다. 兩國은 이 條約의 原則에 입각하여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제, 학문, 기술, 통행, 법률부문의 교류, 우편, 전화, 보건, 문화, 스포츠,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촉진시키고 발전시키는 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追加議定書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조항이 삽입되어야 南北韓 交流 및 協力이 法의으로 보장될 수 있는 것이다.

다 하더라도 現段階에서는 對外去來를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관련법령을 준용 및 보완할 수 있는 南北韓 經濟交流를 위한 特別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sup>18)</sup>

同 特別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基本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경제교류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은 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교류 확대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南北韓 交流에 관한 基本原則을 수립하고 법률적용의 조정(기존의 법률과 특별법 간의 상충), 기업간의 조정(특정상품에 대한 기업간의 과다한 경쟁), 각종 특허 및 승인사항에 대한 조정, 관계부처간의 조정 등과 같은 南北韓 交流에 관한 諸般政策을 協議 및調整하는 負擔機構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교역대상품목의 선정, 계약체결방법, 상품검사 및 상품포장, 품질보증, 클레임(claim)처리, 결제에 관한 제반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상술하면 초기에 있어서는 北韓이 주장하는 원자재 대 원자재, 농산물 대 농산물, 원제품 대 완제품의 交易提案을 수용하되 교역가능상품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남북한 교역의 증진과 함께 長期的으로 南北韓 產業構造의 再調整이라는 측면에서 商品品目을 확대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약체결방법, 계약의 효력과 필요한 조건, 계약서 양식 등은 계약자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北韓政府가 交易當事者이기 때문에 韓國政府의 總括的인 調整이 필요할 것이다.

商品調査의 경우, 계약서 내용과 상품의 품질 및 수량 등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고 검사기관을 쌍방의 합의로 지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交易 雙方의 合意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상품제조자의 檢查證書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商品包裝의 경우, 포장에 계약번호, 상품명, 화물인수자, 규격 등을 명시하도록 하되 국호표기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이 남한상품을 반입할 때 야기될 수 있는 정치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북한측 입장을 수용하고 南北韓 經濟會談 혹은 政府間 經濟協定에서 最終的으로 決定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品質保證의 경우, 상품의 특성에 따라 쌍방간의 합의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다.

18) 물론, 1990년 8월 1일 「南北韓交流協力에 관한 法律」이 통과되었는데, 同法 제3조는 「南韓과 北韓과의 王래, 交易, 協力 사업 및 통신역무의 제공 등 南北交流와 協力を 목적으로 하는 行爲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認定되는範圍안에서 다른 法律에 우선하여 이 法을 적용한다.」라고 規定하고 있지만, 후속관련법규가 제정되지 않았다.

클레임 처리의 경우, 도착한 상품이 약정의 조건 내지는 계약서류의 기재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때 손해배상의 청구권이 발생할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의 유효기간, 방법 등을 계약당사자가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의 解決과 仲裁를 위한 機關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決濟의 경우, 남북한 경제회담에서 스위스 프랑을 결제통화로 하고 청산 결제를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정부간의 경제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雙方의 合意下에 決濟通貨 및 決濟方法 등을決定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수출입 균형방식과 스윙제도를 이용하는 결제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즉, 남북한 경제협정의 체결을 통하여 남북한의 중앙은행 사이에 청산계정을 설치하여 남북한의 교역역조가 신용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양측이 합의한 國際通貨 즉 스위스 프랑貨로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sup>19)</sup>

셋째, 남북한의 技術 및 資本協力이 추진될 단계에서 合作投資와 관련된 特許節次는 현행 외환관리법령 중 미수교국에 대한 해외투자를 준용할 수 있고 합작투자의 지원을 위해서는 수출은행법, 수출보험법, 대외협력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감법 등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陸上運送은 우선 非武裝地域의一定場所를 이용하게 하고 인천과 포항항 개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점진적으로 남북한 선박 및 항공기 취급에 관한 협정과 쌍방의 도로 및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 3. 南北韓 經濟特區를 위한 基本協定

南北韓 經濟特區의 건설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協定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 양측 정부당사자가 체결할 南北韓 經濟特區를 위한 基本協定의 내용에 南北韓 經濟特區의 건설과 관련된 취지와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南北韓 經濟特區의 건설 이후의 구체적 활동내용인 남북한 경제교류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품목, 거래량, 가격, 수송방법, 거래방식, 결제방식

19) 참고로, 東西獨의 경우 1951년 베를린협정 체결 이후 東西獨의 교역은 매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東獨의 경제의 상대적 낙후로 인하여 東獨의 반입 효과가 불가피하게 되자 교역수지 차액에 대하여 일정한 도내에서 청산신용(swing credit)을 공여하였다.

및 거래통화 등과 같은 실무적 시행방법에 관한 협정이 별도로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경제교류를 확대하고 그 안정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가칭 南北經濟協力共同委員會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를 南北韓 經濟特區 내에 상설 주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同 委員會는 투자보장 등을 포함하는 경제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경제교류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同 委員會는 제3국의 은행을 통한 신용장(L/C) 개설업무와 교역확대에 따른 남북중앙은행간의 청산거래협정 체결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南北韓 經濟特區의 기본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협정체결 당사자의 범위 결정과 거래대상품목의 선정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이 2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협정체결 당사자의 범위에는 양지역내의 政策實務者와 함께 民間企業代表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北韓의 경우에는 中央執權的 計劃經濟制度와 자본시장의 취약성에 따라 중앙정부가 가격과 투자를 결정하고 대외 무역은 국내생산을 위한 보조적 기능으로서 '국영무역'이므로 형식적인 의미밖에 없겠지만 南韓의 경우 가격은 市場에 의하여, 투자와 무역거래는 기업에 의하여 각각 결정되므로 民間企業代表가 협정체결 당사자로서 포함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去來對象品目的 選定에 있어서는 경제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비교우위 원칙에 입각할 필요가 있지만, 북한의 1차상품과 남한의 공산품간의 교환과 같은 선-후진국형 교역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垂直貿易과 並行하여 부분적으로는 水平分業의 推進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南北韓 經濟特區내에 상품, 자본 및 기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物理的 障壁, 稅制的 障壁 및 技術的 障壁이 해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物理的 障壁(physical barrier)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품의 국경 통과 시 요구되는 복잡한 행정절차(예로서 原產地 檢查制度)를 폐지하고 人的 移動을 위한 제도를 간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稅制的 障壁(fiscal barrier)을 제거하기 위해서 대략적인 共同 附加價值稅를 설정하고 술, 담배 및 연료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共同 消費稅率을

조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세째, 技術的 障壁(technical barrier)으로서 기술표준화, 시험검사제의 단일화, 군사기술을 제외한 기술규제의 단일화를 도모하고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공동시장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예로서 산업기술 및 섬유유통의 자유화, 통신서비스의 자유화, 은행, 주식 및 보험서비스의 개방, 원활한 운송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通貨安定을 위한 換制度를 강화시켜야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경제교류에 있어서도 COCOM규제를 준수해야 될 뿐만 아니라, 南北韓 經濟特區에서 남북한 합작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서도 COCOM규제를 준수해야 할 것이다. 더구나 북한과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으므로 尖端製品이나 軍事力 增強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물품의 생산에는 慎重한 考慮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 經濟特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정부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과 협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韓國政府의 役割로서 다음과 같이 2가지를 들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人的交流, 物資輸送, 交易, 投資의 분야에서 북한과의 경제교류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조세, 금융, 보험 등과 같은 제반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또한 南北交流協力基金을 통하여 위험부담을 국가재정에서 보전해 주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南北韓 經濟特區에 참여하는 기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둘째, 對北韓 진출에 대한 과다경쟁 방지, 무역 및 투자상의 분쟁해결 주선, 남북한 경제교류상의 애로사항 접수 및 해결 등을 통하여 민간경제단체가 南北韓 經濟交流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정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 IV. 南北韓 經濟特區의 適正地域 選定

##### 1. 適正地域 選定의 基準

南北韓 經濟特區를 위한 適正地域의 선정은 일차적으로 상위계획이나 사업목적에 의거하여 제반 기준을 결정한 후에 이를 근거로 일정한 範域을 설정하고, 그 다음 몇 개의 후보지역을 선정하여 상세한 현지조사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適正地域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南北韓 經濟特區의 適正地域을 선정

하기 위한 범역의 選定基準으로서 다음과 같이 6가지를 들 수 있다.

- i) 休戰線을 중심으로 휴전선 내의 지역이거나 휴전선과 가장 근접한 지역
- ii) 지형과 개발가능면적이 都市를 形成할 수 있는 條件을 갖춘 지역
- iii) 기존의 시설이나 장차 남북한의 교통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간의 交通軸이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지역
- iv) 해당지역을 중심으로 週邊地域의 개발에 있어서 구심적 및 촉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역
- v) 남북한 경제특구의 基本概念 및 固有機能에 입각하여 입지의 선정이 가능한 지역

상기와 같은 6가지 선정기준에 의거하여 都市工學的 接近方法에 따라 4가지 즉 i) 교동도 지구, ii) 강화군 지구, iii) 장단면 지구, iv) 개풍군 지구가 南北韓 經濟特區의 適正地域을 위한 範域으로서 각각 도출되었다.

南北韓 經濟特區의 適正地域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에 필요한 價值觀임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와 관련된 著者의 價值觀은 다음과 같다. 즉, 南北韓 經濟特區는 i) 南北韓의 산업구조를 상호보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經濟協力의 실천장소로서, ii) 남북한의 상이한 政治·經濟·社會體制의 융합을 위한 실험장소로서, iii) 남북분단 이후 꾀리된 民族文化의 同質性 回復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서, iv) 통일민족국가의 실현 후 國土開發의 중심지로서, v) 장차 국제적인 平和市로서의 역할을 각각 수행할 수 있도록 未來指向의으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기의 4가지 範域 중에서 다시 南北韓 經濟特區의 適正地域을 선정하기 위하여 전술한 價值觀에 입각하여 4가지 조건 즉 i) 자연적 조건, ii) 기반시설적 조건, iii) 경제적 조건, iv) 정치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都市工學을 전공하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술한 4가지 範域에 대하여 각각 현지조사를 하였다.

#### i) 自然的 條件

전술한 4가지 範域중에서 선정된 지역들은 지형적 조건, 장래 확장 가능성, 지세, 자연경관, 기상, 관광지로서의 규모와 같은 자연적 조건의 측면에서 특별한 차이가 없었다.

#### ii) 基盤施設的 條件

전술한 4가지 範域 중에서 설정된 지역들의 대부분은 현재 休戰線에 의하여

軍事施設保護區域으로 지정되어 개발이 억제되거나 혹은 낙후된 지역이었다. 다만 일부 군사적인 요충지나 판문점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된 지역만이 남북 한 교류를 위한 최소한의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었다. 특히 북한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의 설치상태에 관한 파악이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현 시점에서는 입지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 밖에 없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南北韓 經濟特區는 經濟協力의 실천장소로서, 상이한 체제의 융합을 위한 실험장소로서,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서, 통일민족국가를 건설한 후 국토개발의 중심지로서, 국제적인 평화시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국토개발의 중심지 역할과 관련하여, 만약 南北韓이 共同으로 合意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면, 南北韓 經濟特區는 한반도의 국토이용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개발사업이 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기반시설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한 南北韓 經濟特區의 立地選定도 가능하겠지만, 통일이 되었을 경우를 상정하여 한반도의 허리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統一國家의 基盤施設로서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lt;表 1&gt; 基盤施設의 條件에 의한 評價

選定基準	교동도 地區	강화도 地區	장단면 地區	개풍군 地區
(1) 鐵道：接近性	-	+	+	-
便利性	-	+	+	-
連繫性	-	+	+	-
(2) 高速道路：接近性	+	+	+	+
連繫性	+	+	+	+
(3) 一般國道：接近性	+	+	+	+
(4) 國際 및 國內空港：接近性	-	+	-	-
(5) 港口：接近性	+	+	-	-
用量, 可能性	-	+	-	-
(6) 用水：數量				
(7) 水質	-	+	+	-
(8) 水源距離	-	-	-	+
(9) 排水 및 下水：水質污染	+	-	-	-
(10) 生產支援機能：				
에너지供給	-	+	-	-
通信施設	-	+	+	-
市場에의 輸送近接性	-	+	+	+
(11) 交通條件：快適性	-	+	+	-
評    價	6	51	11	5

〈表 2〉 經濟的 條件에 의한 評價

選定基準	교동도 地區	강화도 地區	장단면 地區	개풍군 地區
(1) 開發域의 潛在力	+	+	+	+
(2) 圈域의 中心 可能性	-	+	-	-
(3) 支障物 및 報償問題	+	-	+	-
(4) 開發可能地內의 常住 人口 數	+	-	+	-
(5) 全體面積에 대한 農耕地의 比率	+	+	-	-
(6) 地下資源 等의 開發可能性	+	+	+	+
(7) 都市建設 支援可能性	-	+	+	+
(8) 土地價格의 低廉性	+	-	-	-
(9) 用地入手의 便利性	+	-	+	-
(10) 勞動力 確保의 容易性	-	+	+	+
(11) 關聯產業의 集積效果	-	+	+	-
(12) 關聯產業의 接近性	-	+	+	-
(13) 生活支援機能의 充足性	-	+	+	-
(14) 宿泊施設의 用量	-	+	+	-
(15) 宿泊施設의 質的 수준	-	-	-	-
評 價	7	10	11	4

그러나 불행하게도 現在 南北韓은 相互 斷絕된 상태에 있으므로 국가의 기반시설이 어떠한 형태로 계획 및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現段階에서는 既存施設의 配置狀態를 조사한 후에 새로운 기반시설이 될 고속도로 및 고속철도의 예상노선, 국제선 및 국내선 공항의 확장 가능성, 항구의 입지 및 확장방향, 용수의 수급가능성, 배수 및 오물처리의 용이성, 각종 생산지원기능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南北韓 經濟特區의 입지를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

상기와 같은 기반시설적 조건에 의한 地區別 평가분석을 통하여 기반시설의 관점에서는, 〈表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江華島 地區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 iii) 經濟的 條件

제반 경제적 조건하에서 입지선정문제를 분석하면, 〈表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장단면 地區가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 iv) 政治社會的 條件

정치사회적 조건의 측면에서 분석한 〈表 3〉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장단면 地區가 가장 유리한 조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lt;表 3&gt; 政治社會的 條件에 의한 評價

選定基準	교동도 地區	강화도 地區	장단면 地區	개풍군 地區
(1) 既存 居住地와의 斷絕性	+	-	+	-
(2) 特殊地域의 保安 管理性	+	-	+	-
(3) 既存民間權利의 調整難易性	+	-	-	-
(4) 新로운 國土開發의 必要性	+	+	+	+
(5) 南北韓間의 衡平性	+	-	+	-
(6) 南北韓間의 效率性	+	+	+	-
(7) 既存 都市와의 接近性	-	+	+	+
(8) 既存 施設의 利用性	-	+	+	-
(9) 休戰線의 利用性	+	-	+	-
評 價	7	4	8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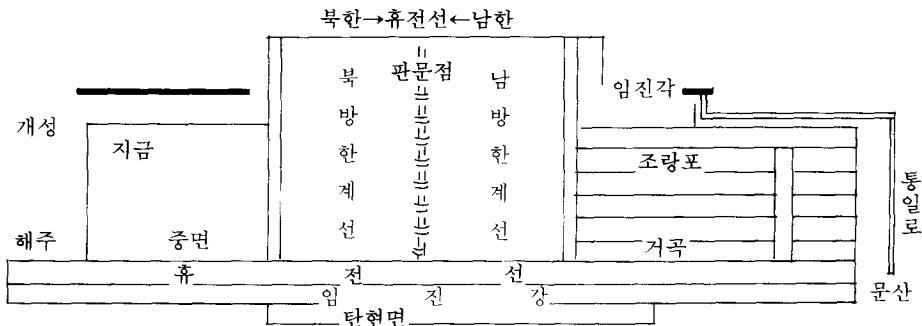
## 2. 適正地域의 選定

전술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基盤施設의 側面에서 보면 江華島 地區가, 經濟的 및 政治社會的 側面에서 보면 장단면 地區가 유리한 입지로 각각 선정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장단면 지구는 현재 판문점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만약 동 지역을 南北韓 經濟特區로 선정 및 개발함과 동시에 판문점 지역을 남북한 분단의 역사적 보존지역으로 설정하고 정비한다면, 판문점 지역은 平和市의 기능으로서의 開發潛在力이 가장 높으므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단면 地區는 南北韓 經濟特區의 適正地域에 관한 본 연구의 가치관 즉 南北韓 經濟協力의 실천장소,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융합을 위한 실험장소, 民族同質性의 회복을 위한 만남의 장소, 統一民族國家의 국토개발 중심지, 국제적 平和市로서의 역할을 각각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도시로서 基盤施設的 側面, 經濟的 側面, 政治社會的 側面에서 평가하더라도 가장 적합한 지역으로 도출되었다.

南北韓 經濟特區의 適正地域으로서 장단면은, <그림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낮은 구릉과 전답지역으로 구성된 평탄한 지역일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부터 서쪽으로 흐르는 임진강을 중심으로 남한의 지역과는 자연적으로 격리된 지역으로서 북쪽으로는 판문점과, 남쪽으로는 임진강과 각각 접하고 있다. 다만 장단면의 일부지역인 조랑포와 거곡지구만이 남한에 속한 지역이긴 하지만 장단면은 임진강으로 인하여 남한과는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지 않고 있다.



&lt;그림 1&gt; 南北韓 經濟特區의 現況 概念圖

北韓地域은 지금과 중면지역이 개성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남한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폭 약 4km의 非武裝地帶가 이곳을 종점으로 좁아져 임진강 자체가 비무장 지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곳으로부터는 서쪽의 육지상에 구획된 非武裝地帶는 없다.

한편, 탄현면 地域은 북한과는 임진강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一山 신도시와는 15km 떨어진 균접한 지역으로서 북한측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남한측의 정책의지에 따라 南北韓 經濟特區를 지원할 수 있는 별도의 기능을 설정하여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 반면에 북한지역은 개성으로 연결되는 넓고 평탄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북한측이 원한다면 이 지역의 서쪽지역을 南北韓 經濟特區의 확대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 V. 南北韓 經濟特區의 段階別 推進戰略

### 1. 建設計劃 및 開發戰略

南北韓 經濟特區의 건설계획과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남북한 정부간의 협약에 의거하여 결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지만, 本研究는 南北韓 經濟特區의 開發原則으로서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i) 남북한간에 합의된 사업계획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段階的으로 추진한다.
- ii)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계획보다 가급적이면 손쉬운 사업계획부터着手하

여 實體를 만들어 나가면서 완성해 간다.

iii) 광역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별도의 협약이 없는 한, 남북한 각자의 經濟特區 地域內部의 施設은 제각기 건설한다.

iv) 경제특구지역 내의 敷地造成 및 基盤施設 設置는 남북한의 협력사업으로서 共同的으로 추진한다.

v) 휴전선 내의 시설은 相互 互惠의으로 남북한의 능력에 맞는 사업을 분담하여 공동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本 研究는 南北韓 經濟特區의 段階別 建設計劃으로서 다음과 같이 6 단계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1단계 :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경제특구지역을 일차적인 개발대상으로 선정하고 차수하여 지역간 연계가 필요한 廣域 基盤施設을 整備한다.

제2단계 : 남한 경제특구 및 북한 경제특구의 基盤施設의 건설을 제각기 각各 推進한다.

제3단계 : 남한 경제특구 및 북한 경제특구의 기반시설을 완공한 다음, 그 시설의 일부를 활용하여, 平和地區, 즉 平和市를 건설한다.

제4단계 : 남한 경제특구 및 북한 경제특구의 기반시설과 평화시의 건설이 모두 완공된 후, 판문점 지역을 南北韓 交流 및 休戰・戰爭 博物館 地域으로 정비한다.

제5단계 :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원자재 및 노동력에 의하여 생산 할 수 있는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남북한 經濟協力を 實質的으로 推進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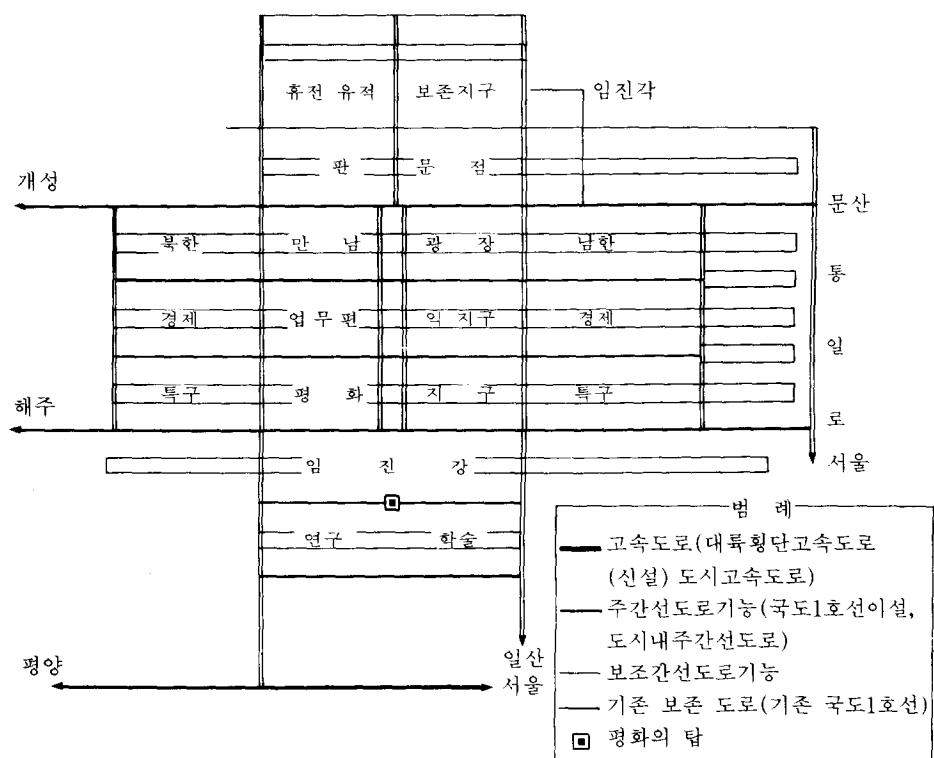
제6단계 : 南北韓 經濟特區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중국・소련・일본・미국 등의 제3국 기업도 유치하여 東北亞 經濟特區로 발전시킨다.

前述한 6단계의 건설과정에 있어서 제기될 수 있는 가장 重要한 문제는 經濟特區의 建設方法인데, 구체적으로 3가지의 방법 즉 i) 南韓은 기반시설의 건설을 위한 費用의 전액을 투자하고 北韓은 기반시설을 設置하는 방법, ii) 남북한이 合作投資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방법, iii) 중국의 천진 경제특구의 건설과 같이, 각종 기반시설을 위하여 南韓이 投資 및 設置하되 北韓은 에너지를 供給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3가지 방법 중에서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것인가는 經濟特區에 대한 남북한 정책당국자의 기본 인식과 대내적 및 대외적 여건 등에 의하여 결정될 문제이다.

前述한 開發原則 및 段階別 建設計劃에 의거하여 南北韓 經濟特區의 開發戰

略으로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i) 經濟特區의 機能과 平和市의 機能을 結合시킴으로써 두 기능의 緊密化 과를 극대화 한다. 즉, 경제특구지구와 평화지구에 필요한 便宜施設은 공유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중심지에 配置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경제성과 도시성을 제고한다.
- ii) 남한 경제특구지구와 북한 경제특구지구는 남북한 각측의 行政區域에 배치하여 쌍방의 정치적·경제적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 iii) 판문점 남쪽의 동서 약 4km, 남북 약 8km 넓이의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남북한 상호협력 사업으로서 평화지구를 건설하여 남북한의 평화공존을 위한 실천적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함으로써 國際的 平和市로서의 象徵性을 부여 한다.
- iv) 남북한 경제특구 지역을 南北으로 6개의 지역으로, 東西로는 3개의 지역으로 각각 나누어 전체 모양이 십자가(+) 형태가 되도록 배치함으로써 한



〈그림 2〉 南北韓 經濟特區의 都市構想 總括 概念圖

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實踐的 意志를 상징적으로 부각시킨다.

前述한 南北韓 經濟特區의 건설방안 및 개발전략을 토대로 하여 同 지역의 도시화 구상을 위한 개념을 총괄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2>과 같다.

## 2. 機能的 役割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南北韓 經濟特區의 機能的 役割을 해당지역 별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i) 남북한 경제특구지역의 東쪽에는 南韓側의 경제특구를, 西쪽에는 北韓側의 경제특구를 남북한의 관할구역에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제반기능을 배치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 ii) 제일 上부지역인 판문점 일대는 대규모 休戰遺跡保存地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영구히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iii) 中上지역은 만남의 기능을 위한 기반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함으로써 남북한 만남의 광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iv) 中中지역은 南北韓 經濟特區의 도시기능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시설, 교통시설, 편의시설을 배치함으로써 장차 平和市內에서 商業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v) 中下지역은 평화의 광장을 설치하고 南北韓의 平和 뿐만 아니라 東北아시아의 平和를 위한 각종 시설이나 이와 관련된 각종 기념비적 건축물 및 시설들을 설치해야 될 것이다.
- vi) 평화의 광장 아래에 있는 임진강 지역은 平和地區와 함께 도시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진강에 水上公園을 개발하여 강변의 남쪽에는 평화의 탑을 건립함으로써 장차 平和市로서의 상징성이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vii) 임진강 남쪽에 위치한 평화의 상징탑까지 폭 200m 이상의 平和中心地帶를 설정하여 도시의 상징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平和의 紀念祝祭行事를 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 viii) 下부지역은 휴전선의 비무장지대가 아닌 남한의 지역으로서 남북한의 평화통일에 관련된 研究學術施設이나 통일 이후 남북한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존립하기 위한 제반 문제점을 연구할 수 있는 각종 研究機能을 갖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특히 이 지구는 남한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남북한 경제

특구와 평화시의 건설에 대한 북한측의 疑懼心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남한이 선도적으로 同地域의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上記의 8가지 機能的 役割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南北韓 經濟特區의 從事者들을 위한 住居問題를 제대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 보아 南北韓 經濟特區에 주거시설을 배치하지 않았으나 도시외곽지역은 도시의 성장을 방해할 자연적인 장애요인이 없으므로 필요한 시기에는 이 외곽지역을 주거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상술하면, 南北韓 經濟特區의 외곽지역의 연장선상에서 보면, 남한의 경제 특구지역은 문산과 일산 신도시의 개발지역과 인접하여 있는 반면에 북한의 경제특구지역은 개성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南北韓 經濟特區의 住居機能을 확보하는 데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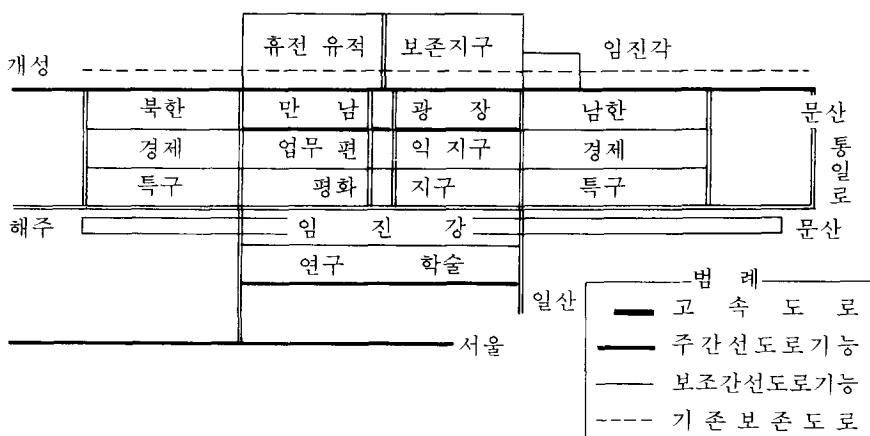
그러나 南北韓 經濟特區의 건설계획의 초기단계에서 북한지역 내의 남한측 과다유입을 북한측이 문제로 삼을 경우, 임진강을 南北韓 經濟特區와의 연결을 단절시키는 자연적인 벽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3. 南北韓 經濟特區의 土地利用 및 交通網 構想

南北韓 經濟特區는 일반도시와는 달리 주거기능이 부여되어 있지 않으므로 도시토지의 이용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다. 즉, 板門店地區는 公園地域으로, 만남의 廣場地區는 공원과 공공시설지역으로, 業務便益地區는 일반적으로 업무상업지역으로, 平和地區는 공원과 공공시설지역으로, 經濟特區는 공업지역으로, 연구학술지구는 연구학술지역으로, 임진강은 공원지역으로 각각 이용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南北韓 經濟特區의 교통망 구상으로서 우선 지역간 교통망 구상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南北韓 經濟特區의 지역을 지나는 국도 1호선과 기존의 경의선은 판문점을 중심으로 하는 휴전유적보존지구에 현재의 상태로 보존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국도 1호선과 京義線 철도를 평화지구를 통과하도록 부설하고 이 노선은 업무편익지구를 통과하도록 하고, 여기에 터미널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을 통과하여 아시아 대륙으로 연결하는 大陸間 超高速電鐵과 高速道路는 南北韓 經濟特區地域의 남부지대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설함이 바람직하므로 고속도로와 남북한 경제특구는 인터체인지(IC)를 통하여 연결되며, 초고



〈그림 3〉 南北韓 經濟特區의 交通網 構想圖

속철도는 서울역을 이용하는 편이 효율적이므로 이곳에는 철도역을 건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한편, 南北韓 經濟特區內의 交通網 構想은 다음과 같다. 즉, 특구내 교통을 위하여 특구의 외부지역과 直接的으로 連繫되는 도로는 主幹線으로, 特區內 도로는 補助幹線으로 각각 구성하여 通過交通과 特區內 交通을 分離함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 도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상술하면, 南北韓 經濟特區의 남북측이 외부지역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므로 남북한 도로를 주간선으로 하되 신설 국도 1호선과 기존 국도 1호선이 업무편 익지구로 연계되는 동시도로를 주간선으로 구상할 수 있다.

임진강변의 도로는 경제특구지구 및 평화지구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근접외 꽈지역과의 연계기능이 강한 편이므로 都市內 高速道路로 구상하되 문산지역 까지 연결되도록 하고 북한쪽을 위해서는 장차 경제기능의 확대에 대비하도록 함이 합리적일 것이다.

東西 방향의 도로를 위해서는 平和地區內部用 交通이 주류를 이를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제특구 내는 보조간선으로 하여 승용차 등의 흐름을 담당하도록 하고 화물교통은 남북의 주간선도로를 이용토록 함으로써 도로별 기능을 분리시켜야 될 것이다.

평화지구의 都心에 남북간 도로를 배치하되 이 도로는 판문점의 휴전유적 보존지구까지 연장함으로써 평화지구와 판문점지역 사이의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임진강 남쪽의 研究學術地區와의 連繫道路는 2개의 노선으로 구상할 수 있는데, 도로는 서울·일산지역과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 서쪽의 도로는 대륙횡단고속도로와 인터체인지(IC)를 설치하여 상호연결될 수 있도록 합이 바람직할 것이다.

交通部는 1991년도 “交通政策方向”(1991, 7, 2)에서 南北韓 交通網의 연결을 위한 基本方向으로서 i) 南北韓 人的·物的 交流에 대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ii) 南北關係의 진전에 따라 서울-평양간의 도로이용, 남북연결로의 개설 및 쌍방의 領空통과, 공동운항 및 제3국 연계수송을 위한 南北韓 協力體制를 구축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국토분단으로 斷線된 京義線, 京元線, 金剛山線의 철도시설을 복원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京義線(문산-봉동 20km)의 경우 南韓측이 문산-장단(12.1km)을, 北韓측이 장단-봉동(7.9km)을 각각 복원시키는 방안을 구상 및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本研究가 제시한 南北韓 經濟特區의 適正地域인 장단면은 바로 京義線의 복원작업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중간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京義線의 복원작업은 南北韓 兩側의 두개의 항구(南韓의 경우 인천, 포항; 北韓의 경우 남포, 원산)를 개방하는 것과 더불어 南北韓이 모두 合意가 된 사항이다. 따라서 京義線의 복원을 南北韓 經濟特區의 건설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南北韓 經濟特區의 현실성은 보다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京義線은 南北韓 經濟特區의 산업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TSR(Trans Siberian Railroad)과 연결함으로써 對유럽 수송루트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 4. 南北韓 經濟特區의 建設時期

南北韓 經濟特區의 建設時期는 남북한 경제교류에 있어서 물자교류, 자본 및 기술협력이 어느 정도 순조롭게 진행된 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南北韓 經濟特區의 설치 자체가 정치 및 군사적 문제에 민감한 영향을 줄 것이며 재원조달의 방식, 관리, 관리방식 및 휴전협정문제 등과 복잡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南北韓 經濟特區의 건설은 남북한 경제통합의 문제, 나아가 정치적 통일의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관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세변화를 보면 南北韓 經濟特區의 건설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북한경제의 구조적 모순으로 인하여對外的開放과對內的改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며, 북한 스스로가經濟特區의 건설을 절감하며 또한 제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년 7월 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유엔국제개발계획기구(UNDP) 주최의 국제회의(한국, 북한, 중국, 몽골 등이 참가)에서 북한대표가東北亞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함경북도 清津과 두만강 하류 羅津, 雄基, 새별일대에經濟特區開發計劃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이 북한 대표는韓國企業이 참가할 경우韓國國籍으로는 곤란하지만 제3국 국적의 형태 즉 유엔기구(UNDP)의 일원으로 혹은 외국현지법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sup>20)</sup> 이에 대하여韓國政府는 금년 8월 평양 제4차南北高位級會談에서, 清津, 羅津, 雄基, 새별지역의 北韓經濟特區에 南韓측의 참여 문제에 관하여 北韓측과 직접 협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北韓이經濟特區를 제의하게 된 背景을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1989년의 경제성장율이 1986년(2.1%) 이후 최저수준인 2.4%, 무역 수지가 9억달러의 적자, 외채총액이 67.8억달러, 재정적자가 40억달러가 될 정도로 경제가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 경제의 파산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질적 모순점인閉鎖經濟體制를對外開放으로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시對內改革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기존 政治體制의 정당성이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現在의 政治體制를 유지하면서對外開放을 통한對內的經濟開發을 추진하기 위한 苦肉策의 하나로서經濟特區라는間接的對外開放政策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진다.

한편,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년 9월 남북한이 동시적으로 UN에 가입하게 되며, 이어서 쌍방의 국가주권이 교차승인됨에 따라 한반도판「2+4」의 긴장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에韓國이蘇聯과의 국교수립에 이어서中國과의 국교수립을, 北韓이美國 및 日本과의 국교수립을 각각 추진하는 외교 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바로 북한의 대외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20) 금년 7월의 울란바토르 회의나 8월의長春회의는 모두 UN국제개발계획기구인데, 同 기구는 北韓에 있는 유일한 UN 산하기구로써 투자정보상담 등을 통해 北韓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환경변수로 작용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즉, 北韓은 그들이 제시한 經濟特區에 蘇聯과 中國뿐만 아니라 美國과 日本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과의 국교수립과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北韓은 작년까지만 해도 UN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敵으로 간주해 왔던 종래의 기본자세를 변화시켜, 바로 UN의 국제개발계획기구(UNDP) 회의를 통하여 經濟特區를 제의했다는 점이다. 또한, 北韓이 이러한 계획을 南北韓高位級會談에서 제의한 것이 아니라 第3國(즉 몽골)에서 유엔기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南韓측에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금년 9월의 UN가입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전략의 일환이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北韓에 대한 접근방법을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특히 금년 9월 南北韓 UN동시가입 이후 韓國은 유엔국제개발계획기구(UNDP) 뿐만 아니라 유엔경제사회이사회(ESCAP)나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등의 유엔산하기구들을 통하여 南北韓 經濟協力を 추진 및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장단면의 南北韓 經濟特區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에 북한측이 제의한 清津, 羅津, 雄基, 새별지역의 經濟特區보다 장단면의 經濟特區가 民族史的으로 現實的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북한측에 설득해야 할 것이다.

民族史的側面에서 보아 장단면의 南北韓 經濟特區가 清津, 羅津, 雄基, 새별지역의 北韓 經濟特區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이유는,前述한 바와 같이 장단면의 南北韓 經濟特區는 i) 南北韓의 산업구조를 상호보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經濟協力의 실천장소로서, ii) 남북한의 상이한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융합을 위한 실험장소로서, iii) 남북분단 이후 괴리된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서, iv) 통일민족국가의 실현 후 국토개발의 중심지로서, v) 장차 국제적인 平和市로서의 역할을 각각 수행할 수 있는 韓民族都市이기 때문이다.

한편, 現實的側面에서 보아 장단면의 南北韓 經濟特區가 清津, 羅津, 雄基, 새별지역의 北韓 經濟特區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이유는 前者의 경우 남북한 쌍방이 엄청난 軍縮效果를 얻을 수 있고 이에 따라 막대한 軍事費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88년을 기준으로 南韓의 軍事費는 77억 8천만 달러(GNP의 4.5%), 北韓의 軍事費는 44억 2천만 달러(GNP의 21.5%)로 각각 나타나 있

다.<sup>21)</sup> 1960년~1988년의 기간에 南韓의 軍事費는 약 34배, 北한의 그것은 약 14.3배 각각 증가하였다. 이러한 軍費競爭이 지속된다면 남북한 쌍방이 모두 낙후하거나 자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 VI. 結論

本研究의 背景은 다음과 같다. 정부는 1988년 7.7 선언을 통하여 北한은 민족공동체의 일부로서 함께 번영을 추구해야 할 동반자임을 공표하고 그 후 속조치로 南北交流協力指針을 발표하였다. 또한 1988년 9월 11일 自主·平和·民主의 3大原則 아래 남북연합의 중간단계를 거쳐 통일민주공화국을 이룬다는 韓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이 공포되었다. 그리고 노대통령은 1988년 10월 19일 유엔연설을 통하여 휴전선의 비무장지대에 “平和市”的 건설을 제안하였다.

한편, 北韓은 금년 7월 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유엔국제개발계획기구(UNDP)주최의 국제회의(한국, 北한, 중국, 몽골 등이 참가)에서 東北亞 개발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함경북도 清津과 두만강 하류 羅津, 雄基, 새별일대에 經濟特區 開發計劃을 갖고 있다고 밝히면서 외국기업의 투자를 희망하였다. 그리고 北韓측은 韓國企業이 참가할 경우 韓國國籍으로는 곤란하지만 제3국 국적의 형태 즉 유엔기구(UNDP)의 일원으로 혹은 외국현지법인의 형태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이와같이 北韓이 經濟特區를 제의하게 된 背景을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1989년의 경제성장율이 1986년(2.1%) 이후 최저수준인 2.4%, 무역 수지가 9억달러의 적자, 외채총액이 67.8억달러, 재정적자가 40억달러가 될 정도로 경제가 파산지경에 이르고 있다.

북한이 경제의 파산국면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본질적 모순점인 閉鎖經濟體制를 對外開放으로 유도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시 對內改革을 단행하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기존 政治體制의 정당성이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現在의 政治體制를 유지하면서 對外開放을 통한 對內的 經濟開發을 추진하기 위한 苦肉策의 하나로서 經濟特區라는 間接的 對外開放政策

21) 國土統一院, 『南北韓 經濟現況 比較』, 1989, 1990.

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금년 9월 남북한이 동시적으로 UN에 가입하게 되며, 이어서 쌍방의 국가주권이 교차승인됨에 따라 한반도판 「2+4」의 긴장완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에 韓國이 蘇聯과의 국교수립에 이어서 中國과 韓中 국교수립을, 北韓이 美國 및 日本과의 국교수립을 각각 추진하는 외교전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바로 북한은 그들이 제시한 經濟特區에 蘇聯과 中國뿐만 아니라 美國과 日本도 포함시킴으로써 이들과의 국교수립과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本研究의 分析目標는 北韓經濟의 對外的 開放과 南北韓 經濟協力を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안의 하나로서 “南北韓 經濟特區”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i) 北韓經濟의 개방을 위한 對內的 및 對外的 요인과 전망, ii) 南北韓 經濟特區의 기본개념 및 기능과 적정지역의 選定, iii) 南北韓 經濟特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남북한 기본관계조약과 경제교류협정의 체결, 南北韓 經濟交流에 관한 特別法의 제정, 남북한 경제특구를 위한 기본협정의 합의에 필요한 내용, iv) 남북한 경제특구의 段階別 開發戰略 및 建設時期에 관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本研究는 南北韓 經濟特區를 超國家的, 脫이데올로기的 行政原理가 적용되며, 노동, 상품, 자본 및 기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共同市場이며, 모든 관세 및 비관세의 무역장벽이 철폐되고, 기술적 및 물리적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 특수지역이라고 定義하였다.

일반적으로 도시는 거주, 휴식, 취업활동, 교통과 같은 4개의 개념 또는 기능이 同時的으로 일정한 공간 내에서 충족되는 지역을 말하지만, 現時點에서 는 도시의 4대기능 중에서 거주를 제외한 나머지 즉 휴식, 취업활동, 교통의 3대기능을 가진 도시를 南北韓 經濟特區로서 설정할 수 밖에 없다.

남북한 경제특구의 適正地域에 관한 본 연구의 가치관은 南北韓 經濟協力의 실천장소, 상이한 政治·經濟·社會體制의 융합을 위한 실험장소, 民族同質性의 회복을 위한 만남의 장소, 통일민족국가의 국토개발 중심지, 국제적 平和市로서의 역할을 각각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가장 많이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의 도시로서 기반시설적 측면, 경제적 측면,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평가하더라도 가장 적합한 지역이다. 이러한 價值觀에 가장 부합하는 곳으로서 장단면 地區가 選定되었다.

本研究가 제시한 南北韓 經濟特區의 適正地域인 장단면은 휴전선으로부터 불과 30여km 떨어진 “一山”이라는, 주거기능이 특화된 신도시가 계획 및 건설중에 있으므로 주거기능이 배제된 남북한 경제특구와 동 기능이 특화된 一山 신도시는 기능적으로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장단면은 바로 京義線(문산-봉동 20km)의 남북한 복원작업(南韓측: 문산-장단 12.1 km, 北韓측: 장단-봉동 7.9km)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中間點이다. 京義線의 복원작업은 南北韓 兩側의 두 개의 항구(南韓의 경우, 인천, 포항; 北韓의 경우 남포, 원산)를 개방하는 것과 더불어 南北韓이 모두 합의가 된 사항이다. 따라서 京義線의 복원을 南北韓 經濟特區의 건설과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南北韓 經濟特區의 현실성은 보다 더 높다고 말할 수 있다.

本研究가 제시한 南北韓 經濟特區의 特性으로서 中國의 經濟特區와 구별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中國의 經濟特區는 中國의 이니시어티브(initiative)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것인 반면에 본 연구의 남북한 경제특구는 南北韓이 합의하여 공동적으로 추진한다는 점이다.

둘째, 中國의 經濟特區는 서방의 자본과 기술의 도입창구로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융합을 통하여 中國式 社會主義體制를 구축하는 體制의 실험장으로서, 홍콩, 마카오 및 대만과의 經濟統合을 위한 기반조성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와 반면에 본 연구의 南北韓 經濟特區는 南北韓의 산업구조를 상호보완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經濟協力의 실천장소로서, 남북분단 이후 괴리된 민족문화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만남의 장소로서, 통일민족국가의 실현 후 국토개발의 중심지로서, 장차 국제적인 平和市로서의 역할을 하는 韓民族의 都市인 것이다.

셋째, 中國의 經濟特區는 사회주의 法規範에 의거하여 特區內의 기업활동을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社會主義的 性格을, 特區內의 외국인 단독투자기업의 소유자가 자본가이고 자본주의적 경제활동을 한다는 측면에서 資本主義的 性格을 모두 갖고 있다. 이와 반면에 본 연구의 南北韓 經濟特區의 경우 特區內의 투자기업은 南北韓 合作企業으로서 이데올로기를 초월하는 것이며, 特區內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조치는 쌍방이 합의하고 체결한 南北韓 基本關係法에 의거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南北韓 經濟特區는 脫이데올로기, 脫정치, 脫군사적 특성을 가짐으로써 일종의 中立國家的 性格을 내포하고 있으며,

特區內의 行政을 南北韓 基本關係法에 의거하여 쌍방이 공동으로 구성된 第3의 組織이 맡는다는 점이다.

本 研究는 南北韓 經濟特區의 開發原則으로서 다음과 같이 5가지를 제시하였다.

i) 南북한 간에 합의된 사업계획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段階的으로 추진한다.

ii)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계획보다 가급적이면 순쉬운 사업계획부터着手하여 實體를 만들어 나가면서 완성해간다.

iii) 광역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별도의 協約이 없는 한, 남북한 각자의 經濟特區 지역내부의 시설은 제각기 건설한다.

iv) 經濟特區 地域內의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는 남북한의 협력사업으로서 공동적으로 추진한다.

v) 휴전선 내의 시설은 상호 호혜적으로 南北韓의 능력에 맞는 사업을 분담하여 공동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本 研究는 南北韓 經濟特區의 段階別 建設計劃으로서 다음과 같이 6 단계를 제시하였다.

제1단계 : 남북한의 이해관계가 합치되는 經濟特區 地域을 일차적인 개발대상으로 선정 및着手하여 지역간 연계가 필요한 廣域 基盤施設을 整備한다.

제2단계 : 남한 경제특구 및 북한 경제특구의 基盤施設의 建設을 제각기 각각 추진한다.

제3단계 : 남한 경제특구 및 북한 경제특구의 기반시설을 완공한 다음, 그 시설의 일부를 활용하여 平和地區 즉 平和市를 건설한다.

제4단계 : 남한 경제특구 및 북한 경제특구의 기반시설과 평화시의 건설이 모두 완공된 후, 板門店 地域을 南北韓 交流 및 休戰・戰爭博物館 地域으로 정비한다.

제5단계 : 남한의 자본 및 기술과 북한의 원자재 및 노동력에 의하여 생산할 수 있는 산업분야를 선정하여 南北韓 經濟協力を 실질적으로 推進한다.

제6단계 : 南北韓 經濟特區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경우, 중국・소련・일본・미국 등의 제3국 기업도 유치하여 東北亞 經濟特區로 발전시킨다.

前述한 開發原則 및 段階別 建設計劃에 의거하여 南北韓 經濟特區의 開發戰略으로서 다음과 같이 4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i ) 經濟特區의 기능과 平和市의 기능을 結合시킴으로써 두 기능의 집적효과를 극대화한다. 즉, 경제특구지구와 평화지구에 필요한 편익시설은 공유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의 중심지에 배치함으로써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經濟性과 都市性을 제고한다.
- ii) 남한 경제특구지구와 북한 경제특구지구는 남북한 각측의 行政區域에 배치하여 쌍방의 政治的 및 經濟的 利點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 iii) 판문점 남쪽의 동서 약 4km, 남북 약 8km 넓이의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남북한 상호협력사업으로서 平和地區를 건설하여 남북한의 平和共存을 위한 實踐的 意志를 대내외에 표명함으로써 國際的 平和市로서의 상징성을 부여한다.
- iv) 남북한 경제특구 지역을 남북으로 6개의 지역으로, 동서로는 3개의 지역으로 각각 나누어 전체 모양이 십자가(+) 형태가 되도록 배치함으로써 한반도의 平和를 정착시키기 위한 實踐的 意志를 상징적으로 부각시킨다.

上記와 같은 단계별 건설계획 및 개발전략에 의하여 南北韓 經濟特區가 건설되고 운용된다면 다음과 같은 期待效果가 야기될 것이다.

첫째, 北韓은 南北韓 經濟特區를 문호개방을 위한 對外窗口로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스럽게 외국의 자본 및 선진기술의 도입을 통하여, 자산제고, 해당산업의 고용증대, 다른 산업에 대한 후방관련효과, 북한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개선을 도모할 수 있고, 對外的으로는 국제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

둘째, 經濟特區를 통하여 美·日·中·蘇 뿐만 아니라 南韓으로부터의 자본 및 기술협력이라는 명분으로(즉, 北韓側의 자존심을 상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원조를 받을 수 있다. 이 때 北韓의 경우, 기간산업과 자동화기계설비, 수송설비 및 생활일용품 등의 수입수요가 큰 부문에서 輸入代替型 外資를 유치할 수 있는 반면에, 南韓의 경우 현재 국제경쟁력이 강한 전기, 전자, 일반기계,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와, 국제경쟁력이 약한 부문으로서 플랜트 해외 이전을 도모하고 있는 신발, 섬유 등의 분야에서 合作投資를 추진할 수 있다.

셋째, 經濟特區를 南北韓 經濟協力의 始發點으로 삼을 수 있다. 상술하면, 북한의 수출가공품 비중은 25%인데 이 중에서 광산물(철강석, 마그네사이트, 유연탄 등) 수출가공품의 비중은 21%이며 총수출의 80%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 광산물에 대한 남한의 연간수입액은 17억달러이다. 즉, 남한이 어차피

수입해야 할 철강석, 마그네사이트, 유연탄을 북한으로부터 구입하게 되면 남한측으로서도 수송비가 절감되어 이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貿易協定을 체결하여 南北韓 經濟特區를 통한 물자교역의 폭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北韓은 南韓에 석탄, 철광석, 아연과 알루미늄 등의 광산물, 옥수수 등의 농산물 그리고 공작기계, 採取설비 등의 공산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南韓은 北韓에 전기, 전자제품, 자동차, 산업용기계, 섬유, 직물, 의류, 의약품 등을 반출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경제특구의 운영을 통하여 단기적으로는 北韓의 개혁 및 개방이 촉진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經濟特區→經濟同盟→經濟的 統合→政治的 統合의 단계별 발전단계를 거쳐 민족통일국가의 실험장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기대효과는 中國 經濟特區의 경우에 여실히 나타나 있다. 中國의 대외개방정책은 經濟特區→沿岸開放都市→沿岸經濟開發區→內陸의 순서로 확대시키고자 하는 데에 거시적 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경제특구와 經濟技術區를 西方의 資本과 技術의 도입창구로서, 국내시장과 해외시장의 연결고리로서 각각 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經濟特區에 市場經濟體制를 도입시켜 社會主義 計劃經濟體制와의 융합을 통하여 소위 “中國式 社會主義體制”를 구축하는 체제의 시험장으로서, 홍콩(심천 경제특구와 인접), 마카오(주해 경제특구와 인접) 및 대만(하문 경제특구와 인접)과의 經濟聯合을 위한 기반으로 운용하고 있다.

다섯째, 現實的側面에서 보아 장단면의 南北韓 經濟特區는 淸津, 羅津, 雄基, 새별지역의 北韓 經濟特區에 비하여 남북한 쌍방이 엄청난 軍縮效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막대한 軍事費가 절감될 수 있다. 1988년을 기준으로 南韓의 軍事費는 77억 8천만달러(GNP의 4.5%), 北韓의 軍事費는 44억 2천만달러(GNP의 21.5%)으로 각각 나타나 있다. 1960년~1988년의 기간에 南韓의 軍事費는 약 34배, 北韓의 그것은 약 14.3배 각각 증가하였다. 이러한 軍費競爭이 지속된다면 남북한 쌍방이 모두 낙후 내지 자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여섯째, 南北韓 經濟特區는 남북한 이산가족의 만남의 광장, 종교인들의 공동집회소, 학술교류장소와 같은 남북한의 상시적 모임장소로서 활용될 수 있다.

前述한 期待效果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우선, 南北韓 經濟特區과 실제로 견

설되어야 하고 또한 원만하게 운용되어야 한다. 다시, 이를 위해서는 “南北韓經濟特區의 建設 및 運用에 관한 基本協定”을 체계해야 된다. 또한 이 基本協定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南北韓 經濟交流에 관한 特別法”이 제정되어야 하며, 다시 이 특별법의 제정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南北韓 基本關係條約과 經濟交流協定이 체결되어야 한다. 즉, 東西獨의 경우 1972년 12월에 체결된 「基本條約」과 같이, 休戰協定에 의거하여 현재 戰時狀態인 남북한의 법적 상태를 平和狀態로 회복시키고 적대관계를 평화공존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한 南北韓 平和條約이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南北韓은 금년 9월 UN 동시가입을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 쌍방은 7·4 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UN 동시가입을 계기로 삼아 南韓측은 7·7 特別宣言과 國家保安法의 상충문제를 해결하는 반면에 北韓측은 武力統一의 국내법을 平和統一指向의으로 改正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쌍방의 國內法 改正是 南北韓의 休戰狀態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대전제조건으로서 南北韓의 平和協定이 체결되어야 하며 이것은 남북한 기본 관계조약에 의하여 구체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남북한 基本關係條約을 체결할 경우, 同條約에 南北韓 交流 및 협력에 대한 법적 기초가 될 南北韓 經濟交流協定(무역협정, 투자보호협정, 조세협정)의 체결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南北韓 基本關係條約과 經濟交流協定을 체결한 후, 정부는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南北韓 經濟交流에 관한 特別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同 特別法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기본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 교류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은 장기적으로 남북한 경제교류 확대에 저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정부는 南北韓 交流에 관한 基本原則을 수립하고 法律適用의 조정(기존의 법률과 특별법 간의 상충), 企業間의 조정(특정상품에 대한 기업간의 과다한 경쟁), 각종 特許 및 承認事項에 대한 조정, 관계부처간의 조정 등과 같은 남북한 교류에 관한 제반정책을 협의 및 조정하는 부담기구를 설립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는 교역대상품목의 선정, 계약체결방법, 상품검사 및 상품포장, 품질보증, 클레임(claim)처리, 決濟에 관한 諸般問題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상술하면 초기에 있어서는 北韓이 주장하는 원자재 대 원자재, 농산물 대 농산물, 완제품 대 완제품의 交易提案을 수용하되 교역가능상품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南北韓 交易의 增進과 함께 장기적으로 南北韓 產業構造 再調整이라는 측면에서 商品品目의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南北韓의 技術 및 資本協力이 推進될 단계에서 合作投資와 관련된 특허절차는 현행 외환관리법령 중 미수교국에 대한 해외투자를 준용할 수 있고合作投資의 支援을 위해서는 수출은행법, 수출보험법, 대외협력기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조감법 등을 준용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陸上運送은 우선 비무장지역의 일정장소를 이용하게 하고 인천과 포항항 개항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점진적으로 남북한 선박 및 항공기 취급에 관한 협정과 쌍방의 도로 및 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협정을 체결해야 할 것이다.

南北韓 經濟特區의 건설이 실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에 다음과 같은 3가지 측면에서 협정의 체결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남북한 양측 정부당사자가 체결할 南北韓 經濟特區를 위한 基本協定의 내용에 南北韓 經濟特區의 건설과 관련된 취지와 효율적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南北韓 經濟特區의 건설 이후의 구체적 활동내용인 남북한 경제교류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상품목, 거래량, 가격, 수송방법, 거래방식, 결제방식 및 거래통화 등과 같은 실무적 시행방법에 관한 협정이 별도로 체결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북경제교류를 확대하고 그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가칭 南北經濟協力共同委員會를 설치하여 동 위원회를 南北韓 經濟特區내에 상설 주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同委員會는 투자보장 등을 포함하는 경제교류협정을 체결하여 실질적인 경제교류의 확대를 도모할 수 있는 각종 제도를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同委員會는 제3국의 은행을 통한 신용장(L/C) 개설업무와 교역확대에 따른 남북중앙은행간의 청산거래협정 체결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南北韓 經濟特區내에 상품, 자본 및 기타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物理的 障壁, 稅制的 障壁 및 技術的 障壁을 해소되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物理的 障壁(physical barrier)을 제거하기 위해서 상품의 국경 통과 시 요구되는 복잡한 행정절차(예로서 原產地 檢查制度)를 폐지하고 人的移動

을 위한 제도를 간소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稅制的 障壁(fiscal barrier)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략적인 共同 附加價值稅를 설정하고 술, 담배 및 연료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共同 消費稅率을 조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技術的 障壁(technical barrier)으로서 기술표준화, 시험검사제의 단일화, 군사기술을 제외한 기술규제의 單一化를 도모하고 서비스의 자유로운 유통을 위한 共同市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예로서 산업기술 및 섬유유통의 자유화, 통신서비스의 자유화, 은행, 주식 및 보험서비스의 개방, 원활한 운송을 위한 제도의 정비를 들 수 있다. 그리고 通貨安定을 위한 換制度를 강화시켜야 될 것이다.

세계적 석학인 아놀드 토인비는 각 文化圈의 탄생과 사멸의 과정을 역사의 도전과 응전의 패턴으로 설명하면서 東아시아가 21세기의 主役으로 부상하여 장차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또한, 세계적 경제학자인 갈브레이드 교수도 21세기에서는 世界經濟의 中心地域은 아시아·太平洋圈 國家일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토인비와 갈브레이드의 예언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태평양 시대의 개막을 대비하면서 동아시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도록 產業構造의 高度化 및 建實化 그리고 國際化에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우리민족은 한반도에 南北韓 經濟特區를 설치함으로써 남북한의 경제교류, 자본 및 기술협력, 경제통합, 정치적 통일을 위한 기반구축에 힘써야 될 뿐만 아니라, 南北韓 經濟特區의 기능을 국제적인 平和市로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上記와 같은 실천적 의지는, 최근의 국제정세가 평화 및 협력의 몰타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실현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南北韓 經濟特區는 알타체제에서 몰타체제로의 변환과정에서 세계사적 변곡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新데탕트의 세계정치구조 하에서 北方 3각관계와 南方 3각 관계의 접합점을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 參 考 文 獻

1. 高正植, “社會主義經濟의 計劃·管理制度,”『共產圈經濟』, 제2권 제2호, 產業研究院, 1989. 6, pp. 115~140.
2. 國土統一院, 『南·北韓 經濟現況比較』, 1987, 1988, 1989, 1990.
3. \_\_\_\_\_, 『北韓經濟綜合評價』, 1988.
4. \_\_\_\_\_, 『岐路에 선 北韓經濟』, 1988.
5. \_\_\_\_\_, 『北韓의 政治經濟』, 1988.
6. \_\_\_\_\_, 『南北韓關係 改善 및 平和制度化 研究』, 1988.
7. \_\_\_\_\_, 『1987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 1988.
8. \_\_\_\_\_, 『南北韓 經濟交流協力의 模索』, 1989.
9. \_\_\_\_\_, 『北韓의 農業生產에 관한 研究』, 1989.
10. \_\_\_\_\_, 『北韓 및 共產圈動向』, 1989, 各號.
11. \_\_\_\_\_, 『1989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 1990.
12. 金光洙, “南北經濟의 展望,”『北韓』, 206호, 1989. 2.
13. 東亞日報社, “原資料로 본 北韓(1945~1988),”『新東亞』 1989년 1월호  
별책부록.
14. 朴東哲, “北韓의 3차 7개년 經濟計劃과 推進方向,”『共產圈經濟』, 1권  
3호, 1988. 12.
15. \_\_\_\_\_, “北韓의 對外經濟開放趨勢와 展望,”『統一問題研究』, 1권 3호  
1989, 가을.
16. 朴春三, “北韓의 經濟改革과 南北韓 交易,”『北韓』, 207호, 國土統一  
院, 1987. 11, pp. 50~58.
17. 北韓研究所, 『北韓總覽』, 1983.
18. 延河清, “北韓의 經濟政策과 運用,”『研究叢書』, No. 57, 韓國開發研  
究院, 1986.
19. 延河清·金炯元, “北韓의 經濟開發化政策 分析,”『韓國開發研究』, 제9  
권 제3호, 1987. 가을.
20. 延河清·金東源, 『南北韓 經濟比較』, 韓國開發研究院, 1988.
21. 吳勇錫, 『中國經濟特區戰略의 評價와 韓國企業의 對應』, 對外經濟政策

研究院, 1991. 4.

22. 李元俊, “北韓 經濟體制의 特徵과 南北韓 經濟交流,”『北韓』, 206호, 1989. 2.
23. 李 鎬, “北韓經濟의 딜레마—外債問題,”『民族再結合의 模索』, 第33集, 國土統一院, 1987. 11, pp. 50~58.
24. \_\_\_\_\_, “南北韓 經濟力量比較,”『民主統一論』, 國土統一院, 1989, pp. 59~104.
25. 林陽澤, 『南北韓 產業 및 技術協力의 推進方案에 關한 研究』, 韓國經濟研究院, 研究總書 No. 64, 1989a. 5.
26. \_\_\_\_\_, 『南北韓 經濟統合에 關한 研究』, 政策資料 89~19, 제1정무장관실, 1989b.
27. \_\_\_\_\_, 『南北韓 經濟特區의 開發戰略과 適正地域의 選定 關한 研究』, 韓國經濟學會, 1991a, 2.
28. \_\_\_\_\_, “北韓經濟의 開放 및 改革 展望,”『統一問題研究』, 第3券 1號 韓國經濟學會, 1991b. 2.
29. \_\_\_\_\_, “北韓經濟의 現況과 對外貿易構造,”『北韓研究』, 大陸研究所, 통권 제3호, 1991c.
30. 張榮豐, 『中國經濟特區研究』, 中國大陸研究, 대만 中華經濟研究院, 1987.
31. Kamath, S.J.,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 Centrally Planned Developing Economy : The Chinese Cas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Oct. 1990.
32. Lim, Y.T., “South Korea-Soviet Union Relationship and Peace in North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the Korea-USSR Friendship Association Conference on 「The Role of South Korea and Soviet Union in the 21st Century」, Institute of Far Eastern Studies Academy of Sciences of the USSR, Moscow, Feb. 1991, pp. 25~27.